

투자위험등급 :  
1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마이다스 거북이 70 소득공제 장기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다스 거북이 70 소득공제 장기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마이다스 거북이 70 소득공제 장기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AL006)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 02-3787-3500)
4.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midas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성 기준일 : 2015년 5월 26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년 5월 29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9. 존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http://www.midasasset.com>  
각 판매회사, 협회 → <http://www.kofia.or.kr>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해야 하며, 투자자가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 가능합니다.**
9. 폐쇄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동성 제공을 위해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금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1. 외국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일부 환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입 후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시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분의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4.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서민과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주식형펀드로서 자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인 마이다스 거북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으로부터의 자본이득과 이자/배당소득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입니다.

\* 상기 투자신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중 “수익자에 대한 과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기본 운용전략

- 이 투자신탁은 주식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70% 이상, 채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30%이하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식모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주식모투자신탁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 모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거나 지수선물을 매도하는 전략을 수행하는 Long-Short전략 등의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하여 주식시장의 등락에 따른 영향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추구할 계획이며 채권 모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투자비중
마이다스 거북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주식 60%이상	70%이상
	투자목적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거나 지수선물을 매도하는 전략을 수행하는 Long-Short 전략 등의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하여 주식시장의 등락에 따른 영향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추구	
	주요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Long-Short 전략/ 자산배분전략/ 증권대여/ 차익거래/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활용하여 주식시장에 대한 노출(Net Exposure) 수준을 20%이하으로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 개별 주식,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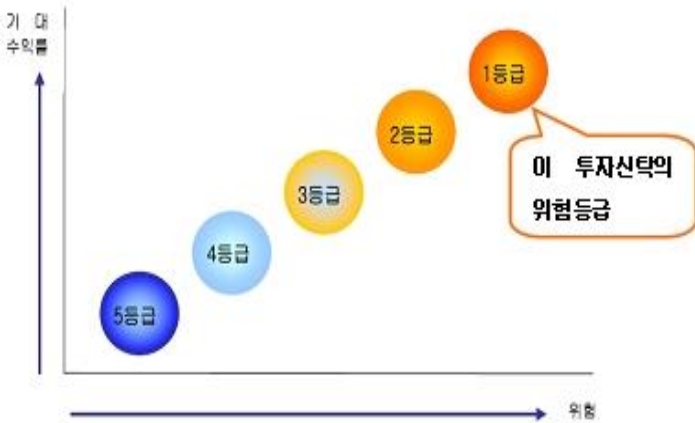
마이더스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주요투자대상	채권 60%이상	30% 이하
	투자목적	자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을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A- 이상 신용등급의 회사채와 같은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얻으면서 채권 투자에 따르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최소화</li> <li>-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을 두어 개별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 변동 위험을 제한</li> </ul>	

###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 주요 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주요 운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해당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되며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증권 차입 매도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모펀드(마이더스 거북이 증권모투자신탁(주식))는 증권의 차입 및 매도를 통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지만, 예상과 달리 차입한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증권차입거래비용 등으로 인하여 단순 매수전략을 구사하는 전략에 비하여 원금손실의 범위하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한 경우, 이후 환매시 같은 증권을 매수하여 환급하여야 합니다. 증권의 가격은 이론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므로 증권차입에 따른 손실도 이론적으로 무한합니다. 또한, 차입한 증권에 대하여 대여기간 중에 대여자의 환수요청이 있을 경우, 급작스러운 증권의 매입 및 상환 등으로 인하여 포트폴리오 운용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권의 차입은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일시적으로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매도한 주식 반환을 위한 주식 매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증권차입비용 및 증권차입에 따른 담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매제한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나, Long-Short전략 등을 통하여 주식관련 위험노출 수준을 낮추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70%이상을 투자하는 이 집합투자기구는 5등급 중 1등급의 위험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주식투자로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투자고객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5. 운용전문인력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주식	허필석	1967	책임 운용역	11	1,373억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재무관리) 석사 -카이스트 대학원(금융공학) 석사 -95.03월~98.12월 장기신용은행 -99.03월~99.08월 삼성증권 -99.09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주식	채경섭	1974	부책임 운용역	9	1,037억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01.02월~02.03월 BSF Company Ltd -02.04월~05.09월 신영증권 -05.09월~06.05월 흥국투자신탁 -08.06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채권	오종록	1973	책임 운용역	13	2,309억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99.07월~01.05월 교보투자신탁운용 -01.06월~02.03월 아이투자신탁운용 -02.04월~03.10월 피데스투자자문 -05.08월~07.04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07.05월~08.04월 알리안츠생명 -08.05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채권	정승호	1975	부책임 운용역	13	1,285억원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뉴욕주립대학교(알바니) 회계학 석사 -07.09월~10.07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10.07월~14.01월 GS 자산운용 -14.01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f.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가. 연도별 수익률

(단위:%)

집합투자기구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마이다스 거북이 70 소득공제 장기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14.03.17~ 15.03.16)	(..~ ..)	(..~ ..)	(..~ ..)	(..~ ..)
	집합투자기구	2.45				
	비교지수	3.86				
마이다스 거북이70 소득공제 장기 증권 자투자신탁 1호C(주식)		(14.03.17~ 15.03.16)	(..~ ..)	(..~ ..)	(..~ ..)	(..~ ..)
	집합투자기구	1.27				
	비교지수	3.86				
마이다스 거북이70 소득공제 장기 증권 자투자신탁 1호Ce(주식)		(14.04.04~ 15.03.16)	(..~ ..)	(..~ ..)	(..~ ..)	(..~ ..)
	집합투자기구	1.91				
	비교지수	3.51				

주1) 비교지수: KOSPI\*7% + 매경BP1~2Y\*93%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연도별수익률 추이



##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 1. 수수료 및 보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종류 C	종류 Ce	
선취판매수수료	-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환매시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종류C	종류Ce	
수익자의 자격	제한없음	온라인 가입자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420%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연 0.700%	연 0.350%	
신탁업자 보수	연 0.020%		
일반사무관리보수	연 0.020%		
기타 비용	연 0.000%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연 1.160%	연 0.810%	-
증권 거래비용	연 0.000%		사유발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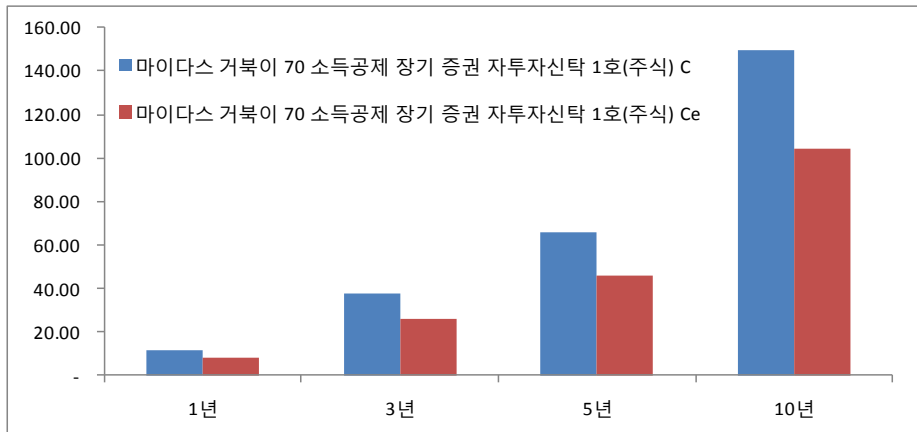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각 투자신탁의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 70 소득공제 장기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의 경우 설정 후 회계기간에 도달하지 않아 기재를 유예합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거북이 70 소득공제 장기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의 경우 설정 후 회계기간에 도달하지 않아 기재를 유예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만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거북이 70 소득공제 장기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종류 C	11.89	37.48	65.70	149.55
거북이 70 소득공제 장기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종류 Ce	8.30	26.17	45.88	104.43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보수 차감 전 기준),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 (개인 및 법인 15.4%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5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소득공제장기펀드 과세 주요 사항]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가입자격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매년 6.30.이전에 가입 시에는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가입 가능함
가입기간	2015.12.31.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저축계약기간	10년 이상 * 단 5년 이내 해지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
가입한도	연 6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함)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다만,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 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또한,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감면세액추징	가입 후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분의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2. 해지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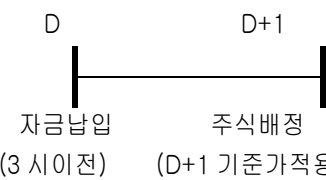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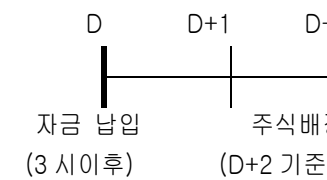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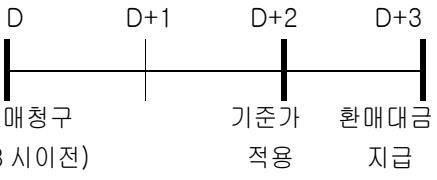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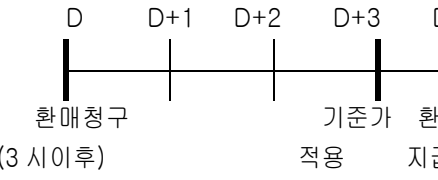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본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1)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midas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 (2) 매입 및 환매 절차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경과후
매입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2 영업일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자금납입 (3 시이전)      주식배정 (D+1 기준가격적용)</p>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자금 납입 (3 시이후)      주식배정 (D+2 기준가격적용)</p>
환매	<p>-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 3 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p>  <p>환매청구 (3 시이전)      기준가 적용      환매대금 지급</p>	<p>- 환매를 청구한 날 (D)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p> <p>-제 5 영업일(D+4)에 환매대금을 지급</p>  <p>환매청구 (3 시이후)      기준가 적용      환매대금 지급</p>

#### 4.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목	제 1 기		
	2015-03-16		
운용자산	5,179,534,843		
증권	4,836,773,775		
파생상품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142,761,068		
기타 운용자산	200,000,000		
기타자산	112,039		
자산총계	5,179,646,882		
운용부채			
기타부채	3,214,596		
부채총계	3,214,596		
원본	5,052,494,425		
수익조정금			
이익잉여금	123,937,861		
자본총계	5,176,432,286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목	제 1 기		
	2014-03-17~ 2015-03-16		
운용수익	106,101,393		
이자수익	3,133,769		
배당수익			
매매/평가차익(손)	102,967,624		
기타 수익			
운용비용	13,760		
관련회사 보수			
매매수수료	13,760		
기타 비용			
당기순이익	106,087,633		
매매회전율(%)			